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. 6. 27 선고 2022가단535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원고 승계참가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5. 30.

판 결 선 고 2024. 6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,
가. 여수시 D 대 668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2, 13, 14, 15,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ㄱ’
부분 14㎡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며,
나. 2017. 1. 6.부터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,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
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1) [청구취지]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D 대
668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지상에 건축된

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75㎡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. 피고는 원고에게 2017. 1. 6.부터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[승계참가취지]주문 제1항과 같다.

N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원고는 피고에게 여수시 D 대 668㎡ 지상 주택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나,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은바,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2.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

주문 제1항 및 별지 소장, 승계참가신청서 기재 각 청구원인과 같다.

나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 정희영

별지

1)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로 이 법원에 ‘청구취지변경신청서’가 제출되었고, 그 내용은 주문

제1항의 기재 내용과 같은바, 이는 위 '청구취지변경신청서'라는 제출 서면의 명칭에 불구하고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승계참가취지를 변경하는 취지로 설행할 수 있는 반면,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이후 원고는 소송탈퇴,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아 그대로 이 사건 소송에 남아 있는 상태인데, 위 제출 서면을 제외하고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원고의 종전 청구취지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본다.